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우편물로 반입되는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 관련 내용 재정비 -

우편물로 반입되는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을 수출입신고대상으로 정하는 「관세법 시행령」에 따라,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일부 개정에 관한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개정 이유

우편물로 반입되는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을 수출입신고대상으로 정하는 「관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고시 내용을 재정비하려는 것임.

II. 주요 개정내용

1. 수입신고대상 우편물 규정 정비(제16조)

- (기존) 수입신고대상 우편물에 대한 법 및 시행령 규정을 그대로 고시에 나열하고,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내용을 규정
- (변경) 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은 고시 본문에 중복 규정하지 않고,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부분만 규정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수입신고대상 우편물) ①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우편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6조(수입신고대상 우편물) ① 영 제261조제3호에서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은 <u>물품가격이 미화 1,0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말한다.</u>
1. 「대외무역법」제11조에 따른 수입의 승인을 받은 물품	〈삭 제〉
2. 법령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	〈삭 제〉
3. 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물품	〈삭 제〉
4. 가공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에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 및 그 물품의 원·부자재	〈삭 제〉
5.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삭 제〉
6.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0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	〈삭 제〉
7. 선물 등 판매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물품으로서 과세가격 5백만원	〈삭 제〉

초과 물품	
8. 수취인이 수입신고하려는 물품	〈삭 제〉
〈신 설〉	② 영 제261조제5호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 설〉	1. 선물 등 판매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물품으로서 과세가격이 5백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
〈신 설〉	2. 수취인이 수입신고하려는 물품
②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2. 「국제우편물 통관 안내서」 수정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에 대한 수입신고 안내사항 추가

III. 시행일

- 2023년 12월 12일

I 첨부 파일(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붙임1] 입안계획서_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붙임2] 신규조문대비표_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붙임3] 전문_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I Contact



정현욱 관세사

T 070-4353-1513
E hujung@esein.co.kr



장수한 관세사

T 02-6011-3091
E shjang1@esein.co.kr



| 세인 홈페이지 | Newsletter 더보기 | 구독신청 |

세인관세법인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인관세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위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The newsletter of SEIN Customs & Auditing Corp. is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and does not include any official views or legal opinions. For more details, please check our website or contact the consultants mentioned above.

Copyright 2023 SEIN Customs & Auditing corp. All rights reserved.